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납품대금 연동 및 하도급대금 연동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029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납품대금 연동 및 하도급대금 연동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이종배의원안)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종배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5. 20.

다. 회 부 일 : 2026. 5.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규정하고,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동제 대상 기업 중 약정을 체결한 기업 비율은 66.2%에 불과하고, 2025년 실태조사에서는 54.3%로 오히려 10%p 이상 감소하고 있어 연동약정 체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통하여 약정을 유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 납품대금 연동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통하여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납품대금 연동 및 하도급대금 연동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이종배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신 설>	☐ <u>납품대금 연동 및 하도급대금 연동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8조의 5 신설)</u> ○ 세액공제 대상 -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자등으로 선정된 자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자등으로 선정된 자 ○ 세액공제 요건 - 납품대금 연동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라 납품대금 또는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 ○ 세액공제 금액 - 조정금액의 15% ○ 세액공제 한도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 적용기한: 2029. 12. 31. ○ 시행일: 2027.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 이종배의원안 2026. 5. 20. 발의(의안번호 19029)

☐ 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라 납품대금 또는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 조정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

☐ 납품대금 연동제와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급격한 원가변동에 따른 부담이 당사자 일방에게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써 2023

년 10월부터 시행되었음.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 문화 확산 및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2023년 10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도입된 것임.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함.¹⁾

동 제도에 따라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고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함. 그리고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기 위하여 수탁기업과 성실하게 협의해야 함.

다만, 소액 계약,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을 수 있음.²⁾

1) 「상생협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주요 원재료”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등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13.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상생협력법」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대금 연동 적용을 피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³⁾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여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내용
2. 납품대금(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을 포함한다)
3.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 방법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적기 위하여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④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일한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또는 납품대금이 각각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도록 기간 또는 납품대금을 나누어 수탁·위탁거래를 하는 행위
2.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행위
3.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상생협력 및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제1항제4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⑥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을 받으면 물품등의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물품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상생협력법」

제4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1조제4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약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10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으로 도입된 것임.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함.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등에는 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함. 그리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함.

다만, 소액 계약,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적지 않을 수 있음.⁵⁾

4) 「하도급법」

제2조(정의) ⑯ 이 법에서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⑰ 이 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의 적용을 피

-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3.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서면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원사업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을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아니하도록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서면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 ⑤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 ⑦ 원사업자는 제6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⑧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면서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제6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⑨ 원사업자는 제8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⑩ 제8항의 통지에는 수급사업자가, 제9항의 회신에는 원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⑪ 제8항의 통지 및 제9항의 회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⑫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⁶⁾

납품대금연동제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납품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를 선정할 수 있고,⁷⁾ 하도급대금연동제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를 선정할 수 있음.⁸⁾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첫째, 납품대금 연동제와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한 위탁기업과 원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들이 연동제를 도입하도록 하여 납품대금 연동제와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음.

2024년에 실시된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수탁기업 중 연동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66.2%였

6) 「하도급법」

제30조의2(과태료) ④ 제3조제5항을 위반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사업자

7) 「상생협력법」

제22조의3(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 선정·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납품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절차 및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8) 「하도급법」

제3조의6(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의 선정·지원)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절차 및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미연동 약정을 한 기업은 8.5%이었으며,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은 25.3%였음.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 여부]

구분	체결(연동약정)	체결(미연동약정)	미체결	합계
응답	66.2%	8.5%	25.3%	1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년 2월)

2025년에 실시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의 73.5%(전년 70.3%)가 연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원사업자의 연동제 의무 회피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2.5%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고, 회피 사유로는 원사업자의 미연동 합의 강요(49.5%)가 가장 많았음.⁹⁾

납품대금 연동 및 하도급대금 연동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면,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을 상향조정 시 발생하는 위탁기업과 원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됨. 따라서, 납품대금 연동제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할 유인이 커질 수 있음.

둘째, 납품대금 연동제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확산은 불공정거래를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원가 변동 위험을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를 완화하면 원가 변동에 따라 중소기업이 매출과 순이익이 부당하게 축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9)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2025년 12월)

또한, 개별 중소기업이 원가 상승 시 매번 원가 상승분 반영 여부를 협상하기보다 표준화된 연동계약 구조를 활용하는 경우, 대금 조정 관련 협상비용과 분쟁 가능성이 줄어들어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짐.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동 관련 중소기업 원부자재 수급 애로 설문조사’(2026년 5월)에서는 94.6%의 기업이 중동 정세 변화로 원가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변하였음.¹⁰⁾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으로 원가 부담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동 세액공제 신설로 납품대금 연동제와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이 확산되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여 제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동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자등으로 선정된 자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자등으로 선정된 자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동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자등으로 선정된 자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자등으로 선정된 자로 한정하면, 선정 안 된 기업들은 법령에 따라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우수

10) 중소기업중앙회, 중동 관련 중소기업 원부자재 수급 애로 설문조사, 2026년 5월

기업자등으로 선정된 기업과 선정되지 않은 기업 간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동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자등으로 선정된 자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자등으로 선정된 자로 한정하면 세액공제의 효과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음.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자등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자등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대금 조정 실적이 우수하다는 요건을 갖춰야 함.

즉,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자등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자등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한정되는 경우 이미 납품대금 연동제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로 대금을 성실하게 조정하고 있는 기업들만이 적용대상이 되고, 기존에 연동제를 실시하지 않던 기업이 신규로 연동제를 도입한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자등으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자등을 대상으로 한정하면 기존에 연동제를 실시하지 않던 기업이 연동제를 도입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효과는 약해져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¹¹⁾

11) 참고로, 재정경제부는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 시 과태료 1천만원 부과 등 관련법에서 의무이행을 담보하고 있는 바, 별도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낮고, 동 세액공제 신설시 기업이 세액공제를 위해 과도한 조정 계약을 체결할 유인이 있으며, 제도가 도입

둘째, 납품대금 연동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의 페널티가 있어 기업들이 연동제를 적용할 유인이 이미 있다고 보임. 따라서, 납품대금 연동제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자금여력이 충분한 대기업도 동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5

취지와 달리 거래 관행 개선보다는 기업의 비용 보전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